

1. 개정이유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(1차 '20.6.9. 공포, '21.6.10. 시행, 2차 '21.1.12. 공포, '21.7.13. 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현장지원반 구성·운영(안 제9조의2 신설)
- 나.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(안 제9조의3 신설)
- 다. 명단공개 신청서 및 제8호서식(안 제9조의4 신설)

3. 참고사항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심사 예정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현장지원반 구성·운영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8조의 2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다.

② 현장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·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관계인 조사
2.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조사
3.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제9조의3(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)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정지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시·도경찰청을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1. 대상자 인적사항

2. 요청사유

3. 법원의 감치명령에 관한 서류

제9조의4(명단공개 신청)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현장지원반 구성·운영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다.</u> <u>② 현장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·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관계인 조사</u> <u>2.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조사</u> <u>3.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3(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)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정지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시·도경찰청을</u>

<신 설>

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요청하
여야 한다.

1. 대상자 인적사항

2. 요청사유

3. 법원의 감치명령에 관한 서
류

제9조의4(명단공개 신청) 법 제21
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공개를
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
서식의 명단공개 신청서에 법원
의 감치명령에 관한 서류를 첨
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
출해야 한다.

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주 소		전 화 번 호	

신청 사유(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)

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	가구주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동거 여부	건강상태 (장애·질병)	비고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신청인의 소득·재산을 확인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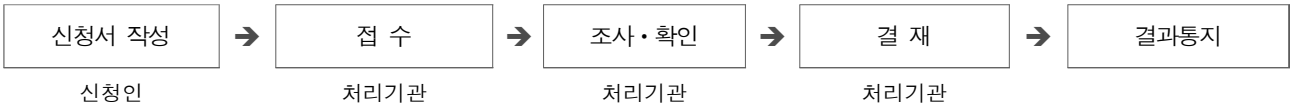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

제출서류	- 소득·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-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여 성 가 족 부

수신자 ○○경찰서장
(경유)

제 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.

요청 항목	[] 운전면허 정지처분(1년 이내) [] 운전면허 정지처분 철회			
대상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전화번호	
요청(철회)사유	※ 양육비 의무 위반금액 불이행 또는 전부 이행 기재			
정지처분 요청 제외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	※ 있을 경우 기재			
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	※ 운전면허 정지처분 예정기간을 기재			

- 붙임 1.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 1부.
2.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서 1부. 끝.

여성가족부장관 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	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	서명	결재권자	직위(직급)	서명
협조자								
시행	처리과명-연도별	일련번호(시행일)	접수	처리과명-연도별	일련번호(접수일)			
우	도로명주소		- 8 -	/ 홈페이지 주소				
전화번호()	팩스번호()		/	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	/공개구분			

명단공개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신 청 인	성명	생년월일	피신청인과의 관계 이혼 [] 비혼 []
	연락처		전자우편 주소
	주소		
피 신청 인	성명	생년월일	직업
	연락처		전자우편 주소
	자택주소 또는 근무지주소		
	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		양육비 채무금액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명단공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여성가족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